

# 가정노동의 지원체계확립을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Supporting System to Household Work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부교수 鄭榮錦

Dept. of Consumer & Housing, Catholic Univ. of Korea

Associate Prof.: Young Keum, Jeong

## 〈목 차〉

- |                     |               |
|---------------------|---------------|
| I. 서 론              | IV. 가정노동 지원체계 |
| II. 여성취업률의 변화추이와 의미 | V. 결 론        |
| III. 가정노동 지원실태      | 참고문헌          |

## 〈Abstract〉

Many Policies were made to increase women's employment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1980s in Korea. But, work-family conflict of married women can not be solved without reducing the household work load, because all of Korean wives have the responsibilities of household work.

So,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supporting system of household work in the women's polici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 the actual conditions for supporting the household work. And supporting system and strategies for policy making related to household work and suggested. Supporting system includes arrangement in household, raise in social consciousness, improvement of market circumstance, establishment of relating acts and public facilities.

## I. 서 론

우리 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노동력 참여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정부에서 여성노동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여성인력에 대한 수

\* 본 논문은 1999학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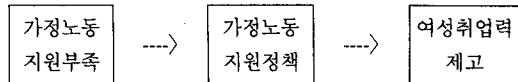
요가 커지고 여성고용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시작으로 하여 90년대의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나 고용인센티브제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1998년부터 시작된 여성정책은 '전전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 광범위한 정책으로 여겨진다. 특히, 이 정책에서는 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다(정무장관실, 1997).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여성경제인 지원, 재고용의 활성화,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현실상,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가정노동을 책임지고 있어 가정노동의 부담이 해결되지 않는 한 취업주부는 직장에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특히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져 서비스 판매직이나 생산직이 아닌 준 전문가 이상의 직종이 늘어나는 오늘날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대졸이상 학력여성의 혼인 후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감하는 현상으로 알 수 있다(통계청, 1997).

물론 여성정책기본계획 중에는 고용촉진을 위해 직장-가정양립 지원체계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지원체계는 고용촉진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취업주부에게 있어서 시장노동과 가정노동은 2교대 노동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이들에게 동등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Hochschild, 1989, Tompson 외, 1992, 62, 제인용), 가정노동의 부담을 줄이지 않고는 남성노동자들과의 경쟁을 기대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채용할당제 등과 같은 여성고용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여성을 위한 가정노동 지원이 부족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가정노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면 가정노동의 부담이 경감되는 동시에 여성의 취업력이 제고되리라는 정책적 개입모형을 설정하였다(〈그림 1〉 참고). 특히 취업주부의 문제에 국한하여 볼 때, 여성고용촉진정책과 동등한 중요성과 비중을 갖는 가정노동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전체 여성정책의 측면에서 볼 때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사료된다.



〈그림 1〉 여성취업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입 모형

## II. 여성취업률의 변화추이와 의미

지난 20년간 우리 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에는 49.5%에 이르렀으며,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어 2005년에는 53.7%, 2010년에는 55.1%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수치는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비하면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률 증가는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성의 교육수준이나 기대수명의 증가와 더불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점차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마침내 1997년에는 49.5%로서 미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인 49.3%를 상회하였다. 또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수는 1997년 현재 6,625,000명으로서 전체 취업여성의 약 75%를 차지한다. 이것은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유입된 젊은 여성들이 여성 노동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60-70년대와 비교해 볼 때 여성인력이 확대되고 다양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현황을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25-29세, 30-34세 집단 여성들의 참가율이 타국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표 1〉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스웨덴의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미국의 경우에는 25-29세, 30-34세 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체 참가율을 훨씬 상회한다. 또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우리보다 낮은 일본의 경우에는 25-34세 집단의 참가율은 우리의 경우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고학력 유배우 여성의 취업률이 떨어진다. 〈표 2〉와 같이 미혼일 경우에는 전문대졸 및 대졸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80%를 상회하지만 결혼 후에는 50%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고졸여성에 비해 결

〈표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및 남녀 평등 관련 지표의 국가간 비교

비교내용	국가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경제활동 참여율	전체	48.7	42.5	59.2	75.6
	25-29	51.1	67.9	75.8	79.1
	30-34	49.1	54.8	74.7	83.0
남녀평등지수 순위		37	13	6	3
남녀권한척도 순위		83	38	11	1
평등기회척도 순위		40	43	28	27
*가정내 평등 '92	남성에게 유리	72.2	65.8	51.4	10.0
	남녀평등	23.5	29.1	32.4	77.1
	여성에게 유리	3.3	4.5	14.3	9.5
*가사분담 정도 '92	요리 담당자 (주부비율)	92.3	91.5	71.0	67.9
	설거지 담당자 (주부비율)	87.9	84.7	57.1	42.9

출처: 1998 여성통계연보의 자료를 재구성함.

\* 김태홍 외, 1996, 여성재취업구조와 고용정책과제, 159.

〈표 2〉 학력별·결혼상태별 경제활동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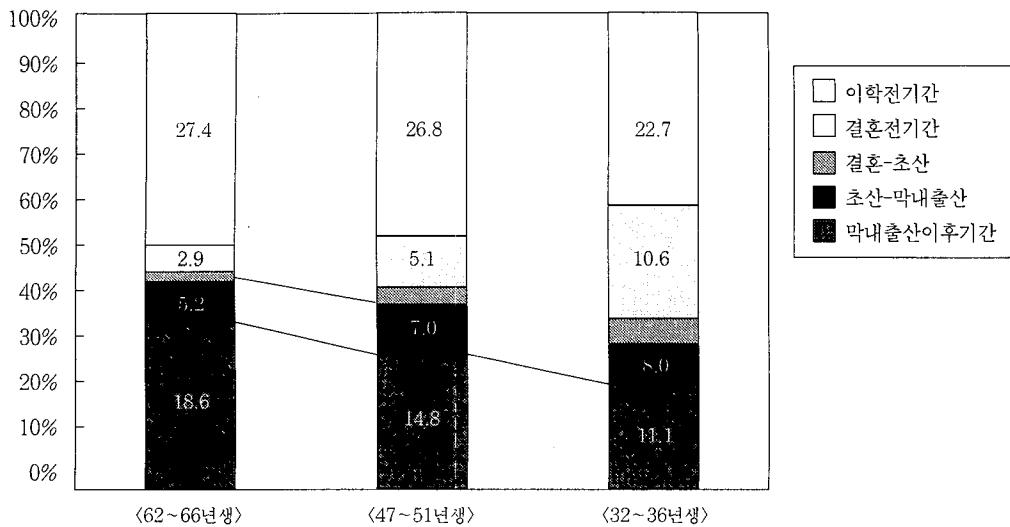
학력 년도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이상	
	미혼	유배우	미혼	유배우	미혼	유배우	미혼	유배우
1990	15.7	57.3	66.1	34.7	87.1	44.0	78.8	39.6
1995	8.1	58.0	66.9	40.7	85.9	40.5	85.0	45.0
1997	6.8	58.0	76.4	44.9	54.8	47.8	85.3	48.0

출처: 1998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의 자료를 재구성함.

흔후 취업포기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또 중졸여성의 경우에 결혼후 취업률이 높아지는 것과 반대의 현상을 보인다. 이것은 노동수요측면에서 고학력 여성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성별격리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김태홍, 1995), 노동공급 측면에서 여성 스스로가 결혼후 (대체양육자가 없어서) 취업을 포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이현송 외,

1996).

그러나 여성의 생애주기를 연령대별로 구분해볼 때 젊은 세대에 올수록 결혼 및 출산후 취업가능기간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7-51년생 여성에 비해 62-66년생 여성의 경우에 학력상승으로 인하여 결혼과 초산까지의 기간이 길어졌으나, 평균자녀수의 감소로



출처: 김태홍 외(1997),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p. 147

〈그림 2〉 여성의 연령세대별 생활사의 변화추이

인해 막내출산이후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졌다. 이것은 여성의 취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결혼과 관계없이 취업을 유지하거나 기혼여성이 신규 또는 재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III. 가정노동 지원실태

#### 1. 가정적인 측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98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현재 90% 이상의 가정노동을 부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는 5.7%에 불과하였다. 또 가정분담에 대한 의식면에서는, 전업주부의 경우에 90% 이상이 부인이 주로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한데 비해 맞벌이 부부는 51.2%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조선일보, 1999.5.15).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남편의 가사분담률이 매우 저조하다. 취업주부가정의 남편이 가정노동과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를 조사한 연구(최혜숙, 1998, 89)에 의하면, 집안수리와 정원 손질 등을 제외한 모든

가사영역에서 참여가 저조하였으며, 자녀와의 나들이나 생활습관돕기는 부부가 공동으로 하였으나 신체적인 관리에는 참여도가 낮았다. 또 남편의 가사분담은 부인의 취업이나 가정생활주기에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기영 외(1994,)의 연구에 의하면, 남편들의 평일 가정노동시간은 부인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20분 내외에 불과하며 휴일에만 1-2시간 정도 도와준다. 사무직 기혼여성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희금 외, 1998, 156)에서도, 남편의 분담비율은 약 20%이며, 가정노동시간이 긴 식생활 영역에서는 4.8%에 불과하였다.

특히 가정노동의 분담률은 취업여성의 직종별로도 차이가 있어, 부인이 서비스판매직이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가정이 전문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가정보다 분담률이 저조하다(장혜경, 1998, 70). 또한 가정노동은 영역별로 소비시간에 차이가 많아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식생활시간이 가장 길었으나, 이 노동에 대한 남편의 분담률이 유독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조희금, 1993, 1998; 장혜경 외, 1998; 이기영 외, 1994; 조미환 외, 1997).

따라서 가정노동의 분담을 통해 가정 내에서 가정

노동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가정노동을 사회화시킬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방안이 절실하며, 영역별 분담률을 고려하여 가정노동시간이 긴 활동을 우선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주부가 자신의 노동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서 분담이나 물적 자원의 활용보다는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크므로(조희금 외, 1998, 134) 가정 내에서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2. 사회의식적 측면

98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여성들도 가정일과 관계없이 계속 취업해야 한다는 응답이 26.8%로 나타났다. 이것은 95년의 20.9%에 비해 높아진 수치이지만, 취업여성의 의식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태홍 외, 1997, 34)에 의하면, 여성도 결혼후 계속 취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약 84%가 찬성하였다. 이것은 여성의 취업에 대해 여성과 남성간 혹은 취업자와 비취업자간의 의견이 상치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역시 여성은 남성들처럼 성공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54%만이 반대하였고, 능력이 같다면 여자보다 남자를 취직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53%가 찬성하였다. 즉, 취업여성들도 여성의 취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남성취업에 부가적인 보조기능으로만 여김으로써, 취업을 여성의 기본역할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식은 사회전체에 만연되어 있다. 최근 IMF사태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여성들이 우선적으로 사표를 내고 있으며, 같은 직장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여성이 직장을 포기하는 등 여성인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세태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취업여성의 남편들은 약 59%가 부인의 취업에 찬성하였는데, 그 중 약 66%는 가계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하였다. 또 반대한 남편(16%)중에는 약 60%가 가사 및 육아의 소홀과 자녀교육 때문에 반대하였다(김태홍 외, 1997, 127-133). 이것은 여성이 가사를 책임지고 난 후에 가계에 보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남성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부인

이 취업을 하더라도 가정노동을 분담하는 것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이렇듯 부인과 남편이 모두 부인의 취업을 보조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가정노동은 여성의 취업과 무관하게 여성의 몫으로 남게 된다. 그 결과 여성은 취업노동에 전념하지 못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취업을 포기하거나 경제적인 보조자의 역할을 떠맡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또 사회적으로 볼 때는, 여성의 취업률을 정책적으로 높이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남성에 비해 무능력하게 여겨진다.

## 3. 시장환경적 측면

현대의 가정은 과거에 비해 시장의존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가정노동의 사회화가 진전되었고, 실제로 의생활이나 식생활분야에서는 사회화가 상당히 진척되었다. 특히 취업주부는 편의품이나 서비스 이용과 같은 가정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시간을 관리함으로써 역할과중으로 인한 시간갈등을 해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취업주부들의 시간관리전략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여러 전략 중 편의품 및 서비스 이용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숙 외, 1995, 110). 마감시간 지키기나 시간계획 등과 같은 전략의 이용도에 비해 시간을 금전으로 대체하는 전략의 이용도는 현저히 떨어졌다. 이것은 편의품이나 서비스의 이용이 습관화되지 않았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에서의 이용부담때문으로 추측되었다.

또 취업주부의 비용을 조사한 연구(김혜연, 1995, 74-80)에 의하면, 취업주부가정은 전업주부가정에 비해 시장재와 서비스에 대한 가정의 지출비가 높았다. 그러나 의생활과 주생활영역에서는 취업주부가정과 전업주부가정간에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전체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시장재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주부의 취업여부보다는 가정소득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대의 산업발달로 인해 시장환경이 가정노동을 사회화시키기에 용이하게 변화되었으나 영리적인 사회화나 상품화가 주축이 됨으로써 소득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시장환경 변화의 일례로, 우리 나라의 외식산업은 1980년대 이후 매년 10% 이상의 매출규모 증가율을 보이면서 성장하여 1996년 현재 시장규모가 20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료품비 중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에 33.5%에 이르렀다(한국식품연감, 1996, 639-640). 그러나 기혼여성들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1998년도 현재 전문행정직이 13.2%, 사무직이 14.0%, 서비스판매직이 34.3%, 농림어업직이 15.1%, 단순노무직이 23.4%를 차지한다(통계청, 고용동향, 1998, 7). 즉, 취업주부들이 종사하는 직종은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직으로서 소득이 낮은 계층의 기혼여성들이 대체로 취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상당수의 취업여성들이 편의품이나 시장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노동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대의 시장환경은 여성들이 가정노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특히 취업여성들의 노동경감을 위해 가정노동의 사회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단지 사회화 방법 중 영리적인 사화 뿐 아니라 공공적인 사회화나 공동적인 사회화도 같이 개발하는 것이 요구되며, 편의품이나 서비스가 더욱 확대되어 저소득층의 취업주부들에게도 부담 없이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것이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직장탁아가 일상적인 직원복지의 일부가 되고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탁아편의를 제공하는 회사가 급증하였고, 탁아소 대신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거나 연결시켜 주기도 한다. 탁아편의를 제공받는 부모들의 경우에는 결근율이 31%나 낮아졌고 이직률도 10%나 감소하였다. 또 회사들은 장기간의 무급 출산휴가나 노인 부양을 위한 휴가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직률을 막고 재교육비용을 절감한다(나이스비트, 1997, 324-328). 이제는 시장원리에 의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제공하는 가족친화적 기업만이 생존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기업도 직원들의 가정생활을 고려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4. 사회제도 및 공공시설측면

우리 나라의 모성보호정책은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1989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1994년에 제정된 고용보험법, 1995년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의해 발전되었다. 이 정책은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현재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유산 조산 사산 휴가, 육아휴직제도, 보육제도 등 많은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생리휴가나 산전산후휴가 등은 실시율도 높고 사용률도 높은 반면에 유산조산휴가, 수유시간제공, 육아휴직 등의 제도는 실시율이 매우 저조하며 사용률도 5% 내외에 불과하다(박정은 외, 1994).

또 보건복지부는 1995년 보육시설 확충에 관한 3개년 계획을 제시하였는데, 이 기간동안 1조 3천억을 투자 및 음자하여 시설 7590개소를 확충시킴으로써 아동 427,000명을 추가 보육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결과, 우리 나라의 보육시설은 1997년 9월 현재 14,62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504,371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다. 이 숫자는 전체 보육대상 영유아 1,041,000명의 48.5%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전체적인 추진실적은 100.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공공보육시설의 확충에 관한 추진실적은 4.7%에 그쳤고, 이에 비해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는 570.9%의 높은 초과실적을 올렸다. 또 직장보육시설도 8.1%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유희정, 1998, 69-73).

이와 같이 불균형한 보육시설의 확충으로 인하여, 현재 총 보육시설 중 민간보육시설이 52.0%, 가정보육시설이 39.2%, 국공립보육시설이 7.7%, 직장보육시설이 1.1%를 차지하고 있다. 영유아보육의 90% 이상을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아동보육의 상업화를 가중시키는 것이며, 특히 저소득층의 취업주부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취업여성이 원하는 보육시설에 관한 조사(김태홍 외, 1997, 124)에 의하면, 조사대상 여성의 50%가 어린이집(국공립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30.3%는 직장보육시설이 바람직하다

고 응답하였다. 또한 연구(1998,154)에 의하면, 전체 취업모의 70%이상이 운영주체로서 국공립보육시설을 요구하였으며 13.3%가 직장보육시설을 원하였다. 이같이 대부분의 취업여성들은 국공립보육시설과 직장탁아를 원하지만 이 시설들은 기존시설의 8%에 불과하여 크게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보육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취업주부가정의 보육비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박정은 외(1994,88)의 결과에 따르면, 취업주부가정은 취업모 소득의 30.7%에 해당하는 액수를 매달 보육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취업모 소득의 50% 이상을 보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경우도 16.8%나 되었다. 이러한 보육비 부담은 취학전 자녀가 2명인 경우에 더 커지고, 특히 저소득 집단의 경우에는 부담정도가 훨씬 커질 수 밖에 없다.

취업주부는 시간자원을 시장노동에 투입하여 얻은 소득으로 보육서비스를 구입한다. 즉 시장노동으로 인해 부족한 가사노동시간이나 자녀양육시간을 시장 서비스로 대체한다. 그러나 자녀양육의 시장비용이 증가하면 여성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이 감소될 수 밖에 없다.

한편, 학교급식도 취업주부들의 식생활노동시간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지원책의 하나이다. 그러나 97년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이었던 학교급식은 97년 말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에만 학교수의 97.3%(학생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79.7%)를 달성했을 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각각 8.6%(학생수 기준 4.9%)와 9.8%(학생수 기준 2.6%)에 불과하다(교육통계연보, 1998, 교육부). 이나마 1999년에 들어서는 4·5월에 전국적으로 약 800명의 학생들이 식중독 피해를 입는 등(중앙일보, 1999. 5. 20) 피해가 많아, 이 제도도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을 높이고자 한다면, 취업유인정책 못지 않게 취업으로 인해 가정에서 야

기되는 문제를 해결해주려는 가정노동지원정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IV. 가정노동 지원체계

##### 1. 여성정책에서의 가정노동지원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헌법에 규정된 남녀평등이념을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정무제2장관실(계획수립당시의 명칭)은 여성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각 부처간에 유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6개 기본전략과 20대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각주처리) 이후 98년 여성정책 추진 성과에서는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강화,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강화, 경제난 심화에 따른 여성문제에 적극 대처, 국제협력강화를 위한 여성역할증대 등이 보고되었다.

6개 기본전략과 20대 정책과제중 취업여성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으로는 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전략과 그에 따른 4대 정책과제-고용기회균등기반의 확립, 여성고용의 촉진, 직장-가정양립지원체계 확립, 여성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를 들 수 있다.<sup>1)</sup> 따라서 전체 여성을 위한 정책 중 가정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취업여성의 문제로 귀결된 직장-가정양립 지원체계 확립이라는 하나의 과제에 불과하였다.

물론 가정노동의 문제는 성차별적 의식의 개선이나 남녀평등교육을 위한 여전조성, 보육사업의 확충 등의 과제에서 간접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고 각 과제별 추진계획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중요한 역할로 남아있는 가정노동에 대한 문제를 도외시한 채 각종 여성정책이 21세기에 걸맞은 여성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위를 향상시키

1) 6대 기본전략: 법, 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확립; 다양한 여성, 가정복지서비스의 확충; 여성의 문화,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기에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본다. 본 연구는 취업주부의 가정노동지원에 관한 것이므로 취업주부의 문제에만 국한시킨다면, 고용상 차별제도 개선, 여성고용촉진의 적극적 유도, 재고용 활성화와 같은 추진계획은 가정노동의 처리문제가 실행되지 않고서는 여성들의 이중노동과 그로 인한 여성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2. 지원차원 및 지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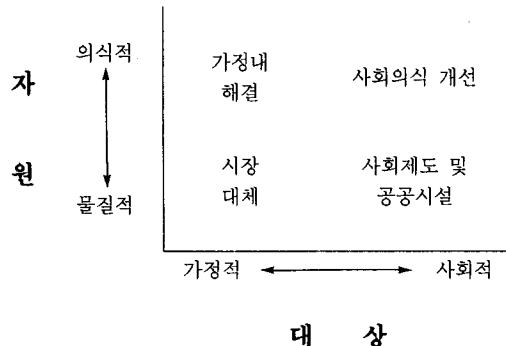
사회복지를 통해 개인이나 가족 또는 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제1차집단, 시장기구, 민간복지단체, 행정서비스 등을 통한 충족방법이 동원될 수 있으며 이것은 각각 비공식부문, 영리부문, 임의부문, 공적부문에서 충족된다. 이러한 요구충족방법을 가사노동 문제해결에 대한 요구에 적용시켜 윤소영(1998,69)은 가사노동의 문제를 가족원간 분담, 영리적 사회화, 복지적 사회화, 공적 사회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충족근거의 구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적인 해결인가 혹은 공적인 해결인가뿐 아니라, 물적 자원을 이용한 것인가 혹은 제도 및 의식개선을 개선하는 것인가에 따라 다시 구분될 수 있다. 즉, 해결의 주체가 어디인가 하는 대상적인 문제와 무엇을 가지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자원적인 문제를 결합하여 최소한 4가지 영역의 지원차원이 제시된다(〈그림 3〉참고).

〈그림 3〉의 내용을 다시 설명해 보면, 첫째로, 의식개선과 사적인 가정을 결합한 영역에서는 가정내 해결이라는 지원차원이 형성된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개별가정에서 가정노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여 가족원들이 가사를 분담하는 방법이다.

둘째로, 공적인 영역에서 의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사회적인 인식제고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사회 구성원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가정노동 지원방법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가정노동을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가족공동의 노동으로 재인식시키며 육아관련 법규를 확대 제정하는 것이다.

셋째로, 사적인 가정이 물질인 금전을 이용하여 가



〈그림 3〉 가정노동 지원체계

정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시장환경개선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가정노동을 시장에 대체하는 것으로서, 가공식품이나 사립 유치원 등과 같이 시장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리적 사회화의 형태이다.

넷째로, 공적인 영역에서 물적 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사회제도 및 공공시설 차원에서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가정노동 지원방법을 법률로 제정하며 이와 관련된 공공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모성보호제도나 이를 보완할 사회복지시설, 유아원 등의 설립이 포함된다. 이 외에 공공기관이나 사업체가 고용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육시설은 집단차원에서 금전적 투자를 통해 가능한 지원방법이며, 민간단체의 자원활동도 포함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4가지 지원차원에서 요구되는 지원전략들은 아래의 〈표 3〉에서 제시된다.

## V. 결 론

우리 나라에서 80년대 후반에 여성정책이 수립된 이후, 정부는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였다. 최근에 발표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나 고용인센티브제가 그 예이다. 그러나 전체 여성 취업자 중 3/4이 기혼여성이며 이 취업주부들이 가정노동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만으로는 여성정

〈표 3〉 가정노동 지원차원 및 지원전략

지원차원	지 원 전 략
가정내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노동량의 경감방안 강구(시간관리전략)</li> <li>-가정노동의 부담, 가정내 평등한 삶 보장</li> <li>-가정노동의 가치인정</li> <li>-가사 및 육아시간, 처리방법, 비용, 관계망 형성</li> </ul>
사회적인 인식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가정노동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li> <li>-인식 개선을 위한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교육 프로그램 제공</li> <li>-방송매체를 통한 인식개선운동 확산(바람직한 가정상 홍보)</li> <li>-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민간기구 및 시민단체의 여론 조성</li> <li>-가정노동의 공동적 사회화(취업여성을 위한 공동체 운동)</li> <li>-가정노동지원자(분담, 부성휴가자)에 대한 가족 및 친지의 지지, 내용홍보</li> </ul>
시장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노동의 사회화(저렴한 시장재화 및 서비스 상품의 개발)</li> <li>-기업의 지원(모성보호제도의 철저한 이행)</li> <li>-기업의 가족친화적 정책(선택적인 작업 스케줄, 직장탁아)</li> <li>-가족관련 정보망 확충(정보공유, 상담프로그램 제공, 일하는 부모 회보 및 세미나)</li> </ul>
사회제도 및 공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성보호제도의 철저한 이행, 불이행기업에 대한 제재 및 이행 기업 혜택</li> <li>-영유아 보육시설 확충(보육시간의 탄력적 운영, 질병시 보육, 간식 및 영양관리)</li> <li>-학령기 아동 관리(방과후 지도, 안전, 숙제 및 학업지도, 생활지도, 간식 및 영양관리, 도시락 싸기) 및 시설마련</li> <li>-청소년지도(방과후 지도, 문화활동, 학업지도, 도시락 싸기) 및 관련 시설 마련</li> <li>-노인부양시설, 일시적인 부양시설, 일시적 간호휴직제</li> <li>-공식적인 지원체계(가족수당, 양육비 공제의 현실화)</li> <li>-정보제공, 출산지원센터</li> </ul>

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오늘날과 같은 경쟁시대에서 가정노동의 부담을 안고 남성들과 대등하게 시장노동을 수행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취업력을 높이기 위한 선결과제로서 가정노동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취업주부들의 가정노동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가정노동지원이 부족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적 대안으로서 지원전략을 마련하면, 가정노동의 부담이 경감되어 취업의 경쟁력이 높아짐과 동시에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리라는 분석을 하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정노동의 지원체계는 대상의 문제와 지원의 문제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다시 가정·사회, 의식·물질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하는 4가지 지원

차원·가정에서의 의식개선, 사회에서의 의식개선, 가정의 물적 자원(물질)의 사용, 사회적 자원의 사용으로 구분된다. 이들 지원차원과 지원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의식 → 가정 내 해결: 시간관리전략, 가정노동분담, 가정노동 가치인정

사회/의식 → 사회적인 인식제고: 가정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여론조성, 가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가정노동의 공동적 사회화

가정/물질 → 시장환경 개선: 가정노동의 영리적 사회화(다양하고 저렴한 상품개발), 가족친화적 기업 정책, 가정노동관련 정보망

사회/물질 → 사회제도 및 공공시설: 모성보호제도

확립, 가정노동의 공공적 사회화(영유아, 학령기,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양육비 공제 현실화

이상과 같이 가정노동 지원체계에 포함될 지원차원과 지원전략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가정노동만을 문제시하여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으므로 가정노동문제를 전체적으로 포괄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또한 가정노동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이 문헌연구를 통해서만 제시되어 실제로 취업주부들이 원하는 대안제시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가정노동의 지원이 여성취업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함으로써, 가정노동의 지원이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보조정책이 아니라 여성정책의 한 줄기로 포함되어야 할 당위성을 밝히는 데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교육통계연보, 1998, 교육부.

김태홍(1996). 여성 재취업구조와 고용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김태홍, 김영옥, 양승주, 문유경(1997).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김혜연(1995). 취업주부의 비용과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박정은, 윤영숙, 서명선(1994). 취업여성의 모성보호비용과 자녀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유희정(1998).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윤소영(1998). 가사노동의 정치화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8). 취업모의 보육시설 이용 및 요구에 관한 실태조사, 가정관리연구.

이정숙 · 이정우(1995). 취업주부의 시간관리전략이 가정관리행동과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3권 4호, 129-148.

이현송 외 4인(1996).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혜경 · 김영란(1998). 취업주부의 역할분담과 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정무장관(제2)실(1997).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정영금 · 문숙재(1998). 여성정책적 측면에서 본 가정 노동지원, 대한가정학회지, 36권 10호, 161-177.

조희금(1998). 사무직 기혼여성부부의 가사노동 분담 실태 및 영향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 147-159.

조희금 · 이연숙(1998). 취업기혼여성의 노동부담 및 대처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125-139.

중앙일보, 1999. 5.20.

최혜숙 · 이은혜(1998). 맞벌이 가족에서 아버지의 가사와 자녀양육참여, 생활과학논집, 12권, 84-93.

동계청, 고용동향, 1998.

농수축산신문, 1996. 한국식품연감.

조선일보, 1999. 5. 15.

존 나이스비트, 패트리셔 애버딘(1997). 메가트랜드 2000, 김홍기 역, 한국 경제신문사.

Oppenheimer, V.K., H.P. Blossfeld, and A. Wackerow (1995). United States of America, in H.P. Blossfeld ed., The New Role of Women. Westview Press, 150-173.

Sainsbury, Diane(1994). Gendering Welfare States, Sage Publications.

Tompson, C. A., C. C. Thomas and M. Maier(1992), Work-Family Conflict: Reassessing Corporate Policies and Initiatives, 59-84, ed. by Sekaren U. and F. T. Leong, Womanpower, Sage Publications.